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7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 김병욱 • 이상헌 • 김민기

유동수 · 김정호 · 고용진

이원욱 · 신현영 · 김교흥

정춘숙・전재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착오송금과 같이 손쉬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 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반환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고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서 도 부적절함.

이와 같이 착오송금액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 문제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적극적 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시스템 안정 담당 기구로서 착오송금인을 포괄하는 예금 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1차적으로 자진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 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 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차입금 및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4).

-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 라.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 등 법적절차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간편한 법적절차 진행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로 한다.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24조의3제1항 중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

의"를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를 "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 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서 정하는 사항
-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

한다.

제39조의2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제39조의4로 하며, 제5장(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 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 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취인의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으로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을 신청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
	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
	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
	<u>한다.</u>
<u><신 설></u>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 7. 제1호부터 <u>제6호까지의</u> 업무 에 부대하는 업무
- 8. 9. (생략)
- ② (생략)
- 제24조의3 (구분 회계처리) ① 예 저 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 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u>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u>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 ⑤ · ⑥ (생 략)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u>반환지원</u>
7 <u>제6호까지 및 제6</u>
호의2의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 (구분 회계처리) ① <u>예</u>
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
송금반환지원계정은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차입)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 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 (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 한다)만 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제5호, 제6호 및 에 따른 업무의 수행 2. · 3. (생략)
- ② (생략)
- <신 설>

- 제6호의2에-----
- 2.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 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 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 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 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 금
-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

<신 설> <신 설>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준용한다.
-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
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
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
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반환
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 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신 설>

<u>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u>한다.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
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 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 앙회·연합회·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 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취인의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 료

제5장 벌칙

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와 같음)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6장 벌칙

제39조의2(벌칙) 제21조의4에 따 제39조의4(벌칙) (현행 제39조의2

제41조(벌칙)	

- 1 · 2. (현행과 같음)
- 3. 거짓으로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을 신 청한 자